제891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 물건 등의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(신설) ㅇ 선박용물건 또는 컨테이너 형식승인의 품질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의 비용으로 성능검사를 실시 – 성능검사의 결과 동일공정 생산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 때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, 교환, 폐기를 명하게 함 ▶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5,제57조의3 2. 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의 세부기준(신설) ㅇ 형식승인 행정처분 기준 중 선박용물건 또는 컨테이너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해야 할 행위의 범위를 거짓, 부정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로 축소하고, – 검정을 받지 않거나 형식승인 변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형식승인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 ▶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,제60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기준(신설) ㅇ 컨테이너 소유자를 대신해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인력, 시설,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해야 함 –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기존 업체가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위해 이미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에 무리가 없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함 ▶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 4.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정지처분 기준(신설) ㅇ 거짓,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부실하게 안전점검을 수행 또는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취소와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–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선박안전법령 상 형식승인을 받은 자, 두께측정업체 및 지정사업장에 대한 취소, 효력정지의 기준을 참조해 최소한으로 정함 ▶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의2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2	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 지정기준 설정(신설) ㅇ 하루 평균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비중을 기준으로,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지정 ㅇ 전년도 매출액,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 및 수전설비의 용량을 기준으로, 일정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지정 ▶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	1.비중요
3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보호 조치 관련 의무(신설) ㅇ 전산실 바닥면적 500㎡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조치 대상시설로 지정(공공기관의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제외) – 다만,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경우,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서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의 시설로 한정 ㅇ 집적정보통신시설이 연속 30분 또는 누적 45분 이상(24시간 이내) 서비스 중단 시, 해당 사업자가 과기정통부에 서면보고 ㅇ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배타적으로 임차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, 보호조치 직접 이행, 임대사업자 협의, 장애 발생 시 보고·통지 등 의무부과 ▶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,제39조제40조제41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(보건복지부)	1. 전문약사의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수련 교육기관 지정 기준 신설 등(신설) ㅇ 전문약사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관,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등 ▶약사법 제83조의3 2.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, 시험방법 등(신설) ㅇ 전문약사 자격인정을 위한 응시자격 및 절차, 시험방법(필기시험) 등의 지정 ▶약사법 제83조의3	1.중요 2.비중요